

22.6.3 통기 및 배수

- (1) 근원직경 20cm 이상인 교목은 뿌리분의 산소공급을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.
- (2) 이식수목의 생육을 촉진하기 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다.

22.6.4 수목의 중량

- (1) 수목의 중량은 지상부와 지하부 중량을 합한 것으로 하며 각각 나무의 종류, 조건, 토양상태 등에 따라 다음 산출식으로 계산한다.

$$W(\text{kg}) = k \times 3.14 \times \left(\frac{B}{2}\right)^2 \times h \times w_1 \times (1+p)$$

식에서, k : 수간형상계수(0.5)

B : 흉고직경(m) (근원직경 $\times 0.8$)

h : 수고(m)

p :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(0.2~0.3)

w_1 : 수간의 단위당 중량

- (2) 수간의 단위당 중량기준은 <부표 22-3>의 기준을 적용한다.
- (3) 수목 지하부 토양의 단위 중량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며,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<부표 22-4>의 기준을 적용한다.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$1,700\text{kg/m}^3$ 를 적용하고, 뿌리를 포함한 분의 단위중량은 $1,300\text{kg/m}^3$ 로 한다.

22.6.5 수목의 규격환산

- (1) 수목의 규격은 수종 및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을 통해 근원직경을 측정하여 적용한다.
- (2) 이 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고, 근원직경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흉고직경과 수고를 근원직경으로 환산하여 <부표 22-5>와 같이 적용한다. 단, 실측 및 환산표에 의한 추정치 곤란한 경우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의 1.2배로 한다.

22.6.6 운반 및 상하차

- (1) 수목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 운반 및 상하차 장비를 조합한다.

〈부표 22-3〉 수간의 단위당 중량기준

중량기준	적용수목
1,340kg/m ³ 이상	가시나무류, 감탕나무, 상수리나무, 소귀나무, 졸참나무, 호랑가시나무, 회양목 등
1,300~1,340kg/m ³	느티나무, 말발도리, 목련, 빗죽이나무, 사스레피나무, 쪽동백, 참느릅나무 등
1,250~1,300kg/m ³	굴거리나무, 단풍나무, 산벚나무, 은행나무, 일본잎갈나무, 향나무, 곶술 등
1,210~1,250kg/m ³	메밀жат밤나무, 벽오동, 소나무, 칠엽수, 편백, 플라타너스 등
1,170~1,210kg/m ³	가문비나무, 녹나무, 삼나무, 왜금송, 일본목련 등
1,170kg/m ³ 이하	굴피나무, 화백 등
1,200kg/m ³	기타 수목

〈부표 22-4〉 수목 지하부 토양의 단위 중량

토양조건		단위중량기준
점질토	보통	1,500~1,700kg/m ³
	자갈 등이 섞인 것	1,600~1,800kg/m ³
	자갈 등이 섞이고 수분이 많은 것	1,900~2,100kg/m ³
사질토		1,700~1,900kg/m ³
점토	건조	1,200~1,700kg/m ³
	다습	1,700~1,800kg/m ³
	모래	1,800~1,900kg/m ³

〈부표 22-5〉 이식을 위한 수목규격 환산 기준

근원직경	흉고직경	수고	근원직경	흉고직경	수고	근원직경	흉고직경	수고
6	5	2.0	22	18	5.5	45	36	12.0
8	6	2.5	25	20	6.0	50	40	14.0
10	8	3.0	28	22	7.0	60	48	16.0
12	10	3.5	30	25	8.0	70	56	18.0
15	12	4.0	35	28	9.0	80	65	21.0
18	15	4.5	40	32	10.0	100	50	25.0
20	16	5.0						